

헌법재판소

■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해 위헌”

헌법재판소가 2015년 심리한 사건 중 사회적 주목도가 가장 컸던 사안은 2월 26일 위헌 결정이 내려진 간통죄 헌법소원이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간통죄 처벌 규정을 다룬 형법 241조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간통죄 조항은 1953년 제정된 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헌재는 간통죄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만큼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에서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다룬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1990년부터 5차례의 위헌 소송이 있었으나 4차례 합헌 판단이 이어진 뒤 다섯 번째 소송에서 위헌 결정이 나온 것이다.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하는 간통죄 규정은 합헌이라는 게 기존 헌재의 입장이었다.

반면 헌재의 5번째 결정에서는 우리 사회의 가치 기준 변화가 반영됐다.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 데다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 의사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는 게 헌재 재판관들의 다수 의견이었다.

헌재는 간통 행위를 형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순기능보다 부작용을 더 많이 낳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간통죄로는 배우자의 외도를 막는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려워진 반면, 잘못이 큰 배우자의 이혼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일시적으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곤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종전 헌재의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 받은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최대 3천여 명으로 추정됐다.

실제로 간통죄 처벌을 무효로 해 달라는 재심 청구가 잇따랐다. 헌재 결정 이튿날인 2월 27일 A씨가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는 2012년 1월 간통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같은 날 춘천지법에도 2013년 11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의 전과는 삭제되며 복역했을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각 법원에서는 재심 신청자에 대한 무죄 선고가 잇따랐다.

대검찰청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4월에 발표했다. 간통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던 1천770명 전원에게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공소취소 등 후속조치를 단행했다는 내용이였다.

■ ‘장발장법’ 사라진다…상습절도 가중처벌 위헌

간통죄 위헌 결정과 같은 날인 2월 26일 헌재는 이른바 ‘장발장법’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

렸다.

장발장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4 관련 조항으로, 과거에 절도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만 다시 훔쳐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절도죄는 형법 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징역 3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헌재는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더라도 그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해 현저히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경우 법 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 재량에만 맡기고 있는데 특가법과 형법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이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2010년 3월 31일 개정된 것)의 적용을 받아 기소된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또 해당 조항으로 구속돼 형을 살았다면 형사보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 헌재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법외노조 근거 법 합헌

5월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5월 28일 서울고법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정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 현직 교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헌재는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률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결정에 대해 전교조는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 ‘성인이 미성년자 연기한 음란물 처벌’ 합헌

사회적 금기와 표현의 자유 사이를 둘러싼 논쟁도 헌법소원 사건의 주된 쟁점이었다. 2015년 헌재에서는 성인이 미성년자 역할로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한 처벌 문제가 다뤄졌다.

헌재의 결론은 처벌이 합헌이라는 것이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6월 25일 옛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8조 2항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구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규정했다. 이를 영리용도로 배포·소지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이 논란이 됐던 것은 확대 해석할 경우 처벌이 과도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아청법'대로라면 영화 '은교'의 사례처럼,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를 연기하며 성적 행위를 묘사한 영화나 실재하지 않는 허구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등도 처벌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을 뜻한다며 법률이 모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을 고려할 때 법이 과잉금지에 해당하거나 법익 균형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 세 번째 위헌심판대선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현재, 공개변론 열어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는 또 다시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현재는 7월 9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88조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공개변론을 열었다.

병역법 88조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실형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왔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4년 서울남부지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같은 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현재도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양심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법질서에 대한 복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는 취지였다.

현재는 2010년 11월에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고, 이듬해 8월 재판관 7(합헌)대 2(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5년 만에, 헌법 소송으로는 3번째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현재에서 다뤄졌다.

공개변론에서 입영을 거부한 김모 씨 등 3명은 재판부에 "병역을 면제해 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를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 씨 등을 대리한 오두진 변호사도 "전 세계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젊은이의 90% 이상이 한국 감옥에 있다"며 "이는 국제적 표준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은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의 서규영 변

호사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 도입은 곤란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 변호사는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며 "병역 회피 행위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측 참고인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오남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선거 관련 사안 주요 심판 결정

•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선거 공정성 위해 필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못지않게 선거 관련 사안도 현재의 주된 심리 대상이다. 현재는 7월 30일 선거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선거법 82조 6항은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글을 올릴 때 실명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거운동 기간에만 인터넷 실명제를 운용하기 위한 법조항이다.

현재는 선거기간 중 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해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등이 유포될 경우 언론사의 공신력과 지명도에 기초해 광범위하게 정보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며 선거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현재는 실명확인에 별다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실명 확인 후에도 글 쓴 사람의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 조항이 정치적 익명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 선거 불공정 보도 언론사에 사과문 강제는 위헌

현재는 7월 30일 공직선거법 8조의 3 3항에 대해서는 8(위헌)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언론사의 선거 관련 보도를 규율하는 내용이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선거 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조사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면 사과문이나 정정보도문 게재를 결정해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중재위는 해당 언론사에 사과문이나 정정보도문 게재를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선거법 256조의 처벌규정에 따라 발행인 등을 형사처벌하게 하고 있다.

현재는 이 조항이 선거 기사를 보도하는 언론사의 공적인 책임의식을 높이는 면에서는 중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언론사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윤리적·도덕적 판단의 표시를 강제하는 사과문은 언론사 명예를 저하시키는 등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정정보도문 게재 등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사과문을 강제하고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 대선 예비후보 등록 6천만원 기탁금 합헌

선거 예비후보의 기탁금 문제가 현재에서 다뤄지기도 했다. 현재는 대통령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6천만원을 기탁금으로 내도록 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8월 11일 결정했다.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

을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법 60조의 2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등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선거 기탁금의 20%를 관할 선거구 선거 관리위원회에 내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기탁금이 3억원이라 예비후보 등록 때는 6천만원을 내야 한다.

현재는 기탁금 제도가 예비후보자 난립을 막고 책임성과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특히 대통령 선거는 진지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들이 난립하면 심각한 폐해가 뒤따를 수 있어 예비후보자 기탁금 제도가 이를 막는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기탁금 제도 도입 전인 2007년 치러진 17대 대선에서는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이 186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11명만이 본선거에 후보로 등록했다. 기탁금 제도가 도입된 뒤인 18대 대선에서는 예비후보자가 18명이었다.

현재는 국민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기탁금 6천만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국가권력담당자를 선출하는 대선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후보 난립 가능성이 다른 선거에 비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본선거에 후보로 등록하면 다른 선거보다 많은 3억원을 기탁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예비후보자 등록 기탁금은 본선거 기탁금의 일부를 미리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경제적 약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일괄 20년 관리…“기본권 침해”

8월 11일 현재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를 다루는 일부 법규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도 내렸다.

대상 법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5조 1항이다.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면 나이나 죄질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20년간 정보를 보존·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2(위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이므로 법 개정 시한인 2016년 12월 31일까지 현행법이 잠정 적용된다.

현재가 문제점으로 본 것은 성범죄자의 죄질 등에 관한 차등도 없이 법조항을 일괄 적용한다는 점이었다. 현재는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면서도 “재범 위험성은 성범죄 종류, 등록대상자 특성에 따라 다른 만큼 등록 기간을 차등화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다만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람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도록 한 같은 법 42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대 2(위헌)대 2(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법정형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이런 ‘몰카 범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고, 신상정보 관리가 재범 억제에 방안이 될 수 있는 등 공익이 크다고 본 이유에서다.

현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사진을 1년마다 새로 촬영해 제출하도록 한 법 조항도 5(합

헌)대 4(위헌)로 합헌 결정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4조 2항에서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외모가 쉽게 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기적으로 사진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 외에 다른 대체 수단을 찾기 어렵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한다는 공익이 큰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 ‘김영란법’ 언론·사학 적용 “기본권 침해” vs “규제 필요”

2016년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도 현재의 심리 대상이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정식 명칭인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쟁점은 언론사와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해 다스리는 것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유치원 관계자 등이 헌법소원을 낸 사건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12월 10일 공개변론을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청구인 측 변론을 맡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언론과 공직자의 공공성이 전혀 다름에도 졸속 입법으로 언론이 공직자와 나란히 부정부패 척결 대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15가지 부정청탁 유형 중 언론이 해당하는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고, 취재활동 위축으로 언론 자유가 침해된다고도 주장했다.

김현성 변호사도 같은 논리라면 건설·교통·의료 등 공공성이 강한 다른 민간영역도 모두 적용대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국민권익위원회 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케이씨엘의 이재환 변호사는 “네이버 국어사전에 ‘촌지’는 ‘흔히 선생이나 기자에게 주는 것을 이른다’고 풀이된다”며 “국민 인식을 바꾸려면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언론의 위축 효과가 현실적으로 증명된 바 없고 공권력의 법 남용 가능성이나 취재활동의 불편함만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현재는 2016년 9월 법 시행 전에 위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현재 “한·일 청구권협정, 위헌심판 대상 아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현재는 한·일 외교당국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이 결정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협정은 1965년 6월 체결됐다. 협정 제2조 제1항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와 법인을 포함한 국민의 재산·권리·이익·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했다.

제3항은 협정 서명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는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일본은 이 조항을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 이윤재 씨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가 부친의 미수금 5천828엔을 1인당 2천원으로 계산해 1천165만16천원을 지급하기로 하자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씨는 현재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지원금 규정 탓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개인청구권을 제한한 한·일 청구권 협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제1항에 청구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진 12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판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는 12월 23일 이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현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 따라서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제한하는지는 현재가 따로 판단하지 않은 셈이다.

현재는 헌법소원 청구에 '재판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결정했다. 헌법소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이 미수금을 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함께 낸 것인데, 한·일 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가 행정소송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현재는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 씨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미수금 계산법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계산법을 규정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현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환율을 참작한 산정방식은 나름의 합리적 기준으로 화폐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이 시작된 해인 1975년을 기준으로 1945년부터의 일본 소비자물가상승률인 149.8배에 당시 엔화 환율 1엔당 1.63원을 곱하고 다시 1975~2005년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인 7.8배를 곱해 환산방식을 정했다.

현재는 "미수금 지원금이 보상금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의 시혜적 금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원금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현재 "주민번호 변경 허용해야"…2018년부터 가능 할 듯

현재는 12월 23일 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정도 내렸다.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강모 씨 등이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게 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현재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현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개선입법 시한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현행 규정을 계속 시행하도록 했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7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했다. 시행령은 가족관계가 바뀌었거나 주민등록번호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 예외적으로 정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는 합헌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법규가 합헌이라는 결정도 나왔다.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 범죄자에게 검사나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는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현재는 "약물치료는 대상자 자신을 위한 치료로 한시적이며, 치료 중단 시 남성 호르몬 생성과 작용의 역제가 회복 가능하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전문의 감정을 거쳐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청구되고 치료 대상자도 좁게 설정하고 있다"며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치료가 이뤄진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조직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 251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3천495개의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4단계 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각 재외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무처를 두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두고 있다. 각 선거관리위원회에 대응해 그 산하기관으로